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618,674,026 | 18,560,221 |
| 일반회계 | 549,683,157 | 16,490,495 |
| 특별회계 | 68,990,869 | 2,069,726 |
| 공기업특별회계 | 55,540,448 | 1,666,213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27,825,886 | 834,777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27,714,562 | 831,437 |
| 기타특별회계 | 13,450,421 | 403,513 |
|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| 1,442,435 | 43,273 |
|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| 750,000 | 22,500 |
|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| 252,968 | 7,589 |
|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| 8,800,087 | 264,003 |
|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| 1,879,725 | 56,392 |
| 지하수특별회계 | 325,206 | 9,756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863,319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